

제45회 흥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6기 2회)

## 본회의 회의록

위원장	원장

▲ 일 시 : 2023. 6. 15.(목) 16:00~17:00 (위원정수: 10명, 참석위원: 9명)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학부모위원 - 김\*\*, 김\*\*, 박\*\*, 조\*\*, 조\*\*

교사위원 - 원장, 박\*\*, 김\*\*, 김\*\*

간사 - 허\*\*

▲ 회 순 : 1. 개회 2. 국민의례 3. 보고 사항 4. 안건상정 5. 제안 설명  
6. 질의 답변 7. 폐회

▲ 안 건 :

1. 제6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2. 2023학년도 여름방학 중 행사
3. 2023학년도 2학기 행사 및 연령별 체험학습 계획
4.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협의
5.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 선출 및 유치원 평가 실행 관련 협의
6. 시설안전점검 및 환경 개선계획
7. 유치원 규칙 개정
8. 2024학년도 방과후 종일반 미운영
9. 기타사항 (1학기 체험학습 실시 보고)

- 개회 -

<간사>

지금부터 제45회 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국민의례 -

<간사>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간사>

위원장이었던 강\*\*위원이 이사로 인하여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어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원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선 보궐선거로 새롭게 학부모 위원으로 선출된 박\*\*위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 위원>

유치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열심히 참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10명의 운영위원 중 9명이 참석하시어 성원 되었으므로 제45회 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건 상정 -

<부위원장>

제45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안건으로는 1. 제6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2. 2023학년도 여름방학 중 행사 3. 2023학년도 2학기 행사 및 연령별 체험학습 계획 4.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협의 5.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 선출 및 유치원 평가 실행 관련 협의 6. 시설안전점검 및 환경 개선계획 7. 유치원 규칙 개정 8. 2024학년도 방과후 종일반 미운영 9. 기타사항 (1학기 체험학습 실시 보고)안건 협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안건 순서대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과 같이 안건 상정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건 자문 -

**안건 1. 제6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제6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간사의 진행으로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임기는 지난번 위원장 임기의 잔여임기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

조\*\*위원을 추천합니다.

<원장>

더 추천하거나 자원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간사>

단독 입후보하신 조\*\* 위원 의 위원장 투표가 있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 위원>

무기명 투표에 동의합니다.

<원장>

투표 결과 9표 중 8표로 다 득표한 조\*\* 위원이 2023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위원>

앞으로 일 년 동안 우리 유치원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안건 2. 2023학년도 여름방학 중 행사

<위원장>

박\*\* 교원위원으로부터 두 번째 안건인 2023학년도 여름방학 중 행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 교원위원>

2023학년도 여름방학 중 행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에는 만5세 유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실시합니다.

행사명	날 짜	비 고
만 5세 여름 영어캠프	2023. 7. 17.(월) ~ 7. 28.(금)	만 5세 신청유아

-주제도서: The Little Mermaid (Fun to Read)

-강사: 만 3·4·5세 방과 후 특기적성 강사(April, Yun, Jess)

-수업 내용: 도서를 함께 읽고 영어로 다양한 활동(미술, 노래, 역할극, 게임 등)을 경험함

-캠프비용 : 10회의 점심 식사와 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

: 캠프 참여인원을 파악한 후 비용 측정될 예정.

**(작년 여름캠프 비용이며 신청 유아 인원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참가비				
유아	교육비	식사비	교통비	
버스이용	147,000	48,000	35,000	230,000
도보통학	147,000	48,000		195,000
무지개반	147,000			147,000

### 안전 3. 2023학년도 2학기 행사 및 연령별 체험학습 계획

<위원장>

박\*\* 교원위원으로부터 세 번째 안전인 2023학년도 2학기 행사 및 연령별 체험학습 계획안내가 있겠습니다.

<박\*\* 교원위원>

2학기 행사 일정입니다. 이사 일정에 따라 개원기념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말과 월요일에 개원기념일 하루를 포함하여 신축건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명	날 짜	비 고
개학일	2023. 8. 18.(금)	방과후과정: 8. 17.(목)
송편만들기	2023. 9. 22.(금)	
한복 예절교육	2023. 9. 26.(화)	
가족운동회	2023. 10. 7.(토)	운동장 또는 강당
학부모 공개수업	2023. 10. 19.(목)~10. 20.(금)	
개원기념일	* 유치원 이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휴원
2학기 학부모 개별상담	2023. 11. 6.(월)~11. 17.(금)	연령별로 상이
홍대부속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공연	2023. 11. 3.(금)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2023. 11.17.(금)~11. 23.(목)	예정
2학기 개구쟁이올림픽	2023. 11. 20.(월)~11. 24.(금)	
유치원 평가		11월 ~12월 중
동화발표회	2023. 12. 1.(금)~12. 13.(수)	
동시발표회	2023. 12. 4.(월)~12. 6.(수)	
동요발표회	2023. 12. 7.(목)	
겨울방학식	2023. 12. 15.(금)	방과후과정: 12.29.(금)
겨울 영어캠프	2023. 12. 18.(월)~12. 29.(금)	
개학일	2024. 1. 19.(금)	1. 17.(수)
수료일	2024. 2. 15.(목)	
졸업식	2024. 2. 16.(금)	

\* 위 일정은 유치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질문사항이 없다면 다음으로 각 연령부장으로부터 연령별 체험학습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 교원위원>

만5세 체험학습 보고입니다.

< 만 5세반 >

	체험학습장소	날짜	체험학습비
1	서울식물원	8. 31.(목)	무료
2	농업박물관	9. 7.(목)	무료
3	국립중앙어린이박물관	9. 14.(목)	무료
4	안전 인형극(중강당)	9. 19.(화)	무료(마포구청 지원)
5	졸업여행: 퍼스트가든	9. 21.(목)	1인 14,000원
6	월드컵경기장	10. 5.(목)	1인 700원
7	매봉산 산책	10. 12.(목)	무료
8	성미산 산책	10. 26.(목)	무료
9	월드컵공원	11. 2.(목)	무료
10	홍대부초 견학	11. 10.(금)	무료
11	가을소풍: 서울과학관	11. 16.(목)	1인 500원
12	에너지드림센터	11. 30.(목)	무료
13	뮤지컬 관람	12. 14.(목)	미정
14	뮤지컬 관람	2. 2.(금)	미정

<김\*\* 교원위원>

만4세 체험학습 보고입니다.

< 만 4세반 >

	체험학습장소	날짜	체험학습비	
1	목동 재난체험관	8. 29.(화)	무료	
2	매봉산 산책	9. 5.(화)	무료	
3	가을 소풍 (국립서울어린이과학관)	9. 12.(화)	1인 500원	
4	안전 인형극(중강당)	9. 19.(화)	무료(마포구청 지원)	
5	국립민속어린이박물관	9. 22.(금)	무료	
6	고궁박물관	10. 6.(금)	무료	
7	월드컵공원	10. 10.(화)	무료	
8	가을산행(하늘공원)	10. 24.(화)	1인 2,200원	
9	월드컵경기장	11. 7.(화)	1인 700원	
10	남산수학관	연두	11. 14.(화)	무료
		파랑	11. 17.(금)	
11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 로켓 체험	11. 21.(화)	무료	
12	kbs견학홀	12. 5.(화)	무료	
13	뮤지컬 관람	12. 14.(목)	미정	
14	뮤지컬 관람	2. 2.(금)	미정	

<간사>

< 만 3세반 >

	체험학습장소	날짜	체험학습비	
1	성미산 산책	9. 8.(금)	무료	
2	가을 소풍 (크라운해태키즈뮤지엄)	9. 15.(금)	1인 9,000원	
3	안전인형극(중강당)	9. 19.(화)	무료(마포구청 지원)	
4	덕수궁 견학	9. 21.(목)	무료	
5	매봉산 산책	10. 13.(금)	무료	
6	가을산행(하늘공원)	10. 27.(금)	1인 2,200원	
7	월드컵공원	11. 3.(금)	무료	
8	서울식물원	11. 10.(금)	무료	
9	어깨동무스토리움	주황	11. 22.(수)	무료
		노랑	11. 24.(금)	
10	아이숲놀이터	12. 1.(금)	무료	
11	뮤지컬 관람	12. 14.(목)	미정	
12	아이숲놀이터	1. 26.(금)	무료	
13	고고스 빛 모래 그림(중강당)	1. 30.(화)	1인 16,500원	
14	뮤지컬 관람	2. 2.(금)	미정	

\* 위 일정은 유치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

체험학습지 예약은 다 된 건가요?

<김\*\* 교원위원>

예약할 수 있는 것은 예약이 다 한 것이며, 방문 한 달 전에 예약이 가능한 것들은 추후 예약할 예정입니다.

<원장>

여건이 되는대로 따라가며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험학습을 함께 가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견학지를 예약하여 교육활동과 잘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학부모가 참여하는 수업이 미리 공지되면 여행 일정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원위원>

오리엔테이션 날 안내해 드린 것과는 아마 크게 변동은 없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안내해 드린 날짜와 일치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정해진 학부모 참여 행사는 사전에 빨리 안내하겠습니다.

#### 안건 4.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실행 절차 협의

<위원장>

이어서 네 번째 안건인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실행 절차 협의 안내하겠습니다.

<박\*\* 교원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학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및 아이디 배부 등은 2학기에 안내드릴 예정이며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하여 문항에 대해 선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위원 두 분을 위촉하려 하는데 자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위원>

관리위원에 참여하겠습니다.

<김\*\* 위원>

저도 관리위원에 참여하겠습니다.

<박\*\* 교원위원>

문항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I. 목적

- \*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을 지원
-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을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
-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교육 만족도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 형성

### II. 평가 대상 및 영역

- \* 원장: 유치원 경영 및 지원
- \* 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 III. 평가 방법

- \* 교원능력개발평가 로그인용 아이디 배부 (접속 방법과 아이디는 통신문으로 안내)
- \* 자녀의 유치원 생활, 유치원 경영 만족도를 설문조사로 응답함 (11월 예정)

#### IV. 결과의 활용

- \*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교원은 자기 개발 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함
- \* 유치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 V. 기대효과

-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치원 문화를 정착
- \* 유치원의 교육력제고를 통해 교육당사자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

#### VI.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 별첨 -

#### VII.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연번	구분	성명	직위	위촉기간	비고
1	학부모위원	김문경	학부모	2023.6.15.~2024.2.29.	
2	학부모위원	김소정	학부모	2023.6.15 ~2024.2.29.	
3	당연직위원	박혜원	교무부장	2023.6.17.~2024.2.29.	평가 관리자
4	교원위원	허윤진	연령부장	2023.6.17.~2024.2.29.	
5	교원위원	김현정	연령부장	2023.6.17.~2024.2.29.	

#### VIII. 교원능력개발평가 문항 예시 (2022년 자료 기준)

##### 1) 원장

연번	평가지표	내용	만족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유치원 경영 목표 관리	원장선생님께서서는 유치원 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원장선생님께서서는 유치원의 여건과 유아들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실천합니다.						
3	창의·인성 원아관리	원장선생님께서서는 창의·인성 교육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4	교실수업 개선	원장선생님께서서는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유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5	시설관리	원장선생님께서서는 유치원 시설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합니다.						
▶선생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2) 담임교사

연번	평가요소	평가 지표	내용	만족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수업실행	교사-유아 상호작용	자녀가 선생님과 수업이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2	평가 및 활용	평가결과의 활용	선생님께서서는 자녀의 수준이나 발달에 맞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3	상담 및 정보 제공	개별 유아 특성 파악	선생님께서서는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대하여 상담해주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4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유치원 생활적응지도	선생님께서서는 자녀가 유치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도해 줍니다.					
5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기본생활습관지도	선생님께서서는 자녀에게 기본생활습관을 갖도록 지도해줍니다.					
▶선생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안건5.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 선출 및 유치원 평가 실행 관련 협의

<위원장>

이어서 다섯 번째 안건인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 선출 및 유치원 평가 실행 관련 협의 안내하겠습니다.

<박\*\* 교원위원>

유치원 평가가 1년은 서면평가, 2년은 자체평가로 진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매해 자체평가로 실시되며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이 함께 유치원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해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두 분 학부모님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평가관리위원회는 1년 동안 교육과정을 경험하시고 견학, 활동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안전파트 부분에서는 유치원을 직접 다니면서 점검 할 예정입니다. 신축건물 이사 후 12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에 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다.

<김\*\* 위원>

저도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다.

<박\*\* 교원위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I. 목적

- \* 자율적인 유치원 교육의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
- \* 교육의 주체(유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참여·소통·협력하는 자치 문화 조성
- \* 단위유치원의 주도적 건강 및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유치원 환경 조성
- \* 유치원 교육에서 '계획-실천-평가-환류'의 자율 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유치원 책무성 강화

## II. 기본 방침

- \* 유치원 평가는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포함하여 유치원 교육활동의 '계획-실천-평가-환류'과정으로 실시
- \* 유치원 교육공동체가 능동적으로 참여·소통·협력하여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 I., II.영역의 평가문항은 유치원 교육목표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III.영역의 경우 필수 평가문항으로 구성하고 자체평가 위원회를 통해 평가
- \* 유치원 평가실시 후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그 결과는 차기년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활동 개선에 활용

## III. 유치원 자체평가 추진 계획

### ▣ 평가기간

- 평가 대상 기간: 2023. 3월~2024. 2월
- 평가 실시 시기: 2023. 12. 1.(금)~2023. 12. 14.(목)
- 유치원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2023. 12. 29.(금)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교원위원 5명, 학부모위원 2명(총 7명)

연번	직위(급)	성명	구분
1	원장	김○○	교원위원
2	교사	박○○	
3	교사	김○○	
4	교사	허○○	
5	교사	김○○	
6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김○○	학부모위원
7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김○○	

■ 유치원 자체평가 추진 일정

단계	추진 절차	시기 (월/주)
계획	1.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2023년 6월
	2. 유치원 평가 계획 수립	2023년 6월
실천	3. 유치원 교육활동 자율점검	2023년 6월
	4. 유치원 평가 연수 및 컨설팅 실시	2023년 8월
평가	5. 유치원 평가 자료 수집 및 자체평가 실시	2023년 12월
	6.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7.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환류	8.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2024년 2월 (유치원 홈페이지), 2024년 4월(정보공시)
	9. 차기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	2024년 1월

#### IV. 유치원 자체평가 세부 추진 일정 및 업무분장

업무 추진 사항	일정	업무담당자
2023 유치원 평가 계획 수립	2023. 3월	박○○,
유치원 평가 교직원위원 선정 및 업무분장 협의	2023. 6월	교원 전체
평가지표별 평가문항 선정 및 수정	2023. 6월	박○○, 김○○, 허○○
<영역 I>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영역 II>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유치원 운영		
학부모위원 선정 및 연락	2023. 6월	허○○
평가지표별 평가문항 결정	2023. 9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교직원, 학부모 설문 평가	2023. 12월 1주	유치원 교육공동체 (교직원, 학부모)
평가 결과 자료 통계처리	2023. 12월 2주	허○○,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분석	2023. 12월 3주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2023. 12월 4주	박○○, 김○○

안전6. 시설 안전 점검 및 환경 개선 계획

<위원장>

이어서 여섯 번째 안전인 시설 안전 점검 및 환경 개선계획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원장>

1. 2년 1회 바깥놀이터 시설 점검 실시, 매년 3회 자체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2. 모래소독 실시 (4월 27일)
3. 매월 4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대학과 안전관리 회의를 진행 및 보고
4. 유치원 건물 신축 건물 8월말 완공 예정, 사용승인 후 9월 이사 예정

여름에 비가 어느 정도 올지에 따라 완공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내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경우 주차장 진입 도로와 외부 주차장 등 토목공사가 지연될 수 있어 지금으로서는 완공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8월 초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한 달 정도 처리기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가능한 추석 전에 이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8~9월 중 사용승인 심사 과정을 체크해 보며 이사 날짜를 잡아야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주말과 개원기념일을 붙여 사흘 동안 이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숲속놀이터 쪽 나무 턱이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깥놀이터 점검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7. 유치원 규칙 개정

<위원장>

이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안전인 유치원 규칙 개정을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먼저 올해 초 4월에 유치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고 우수하다고 하였습니다. 유치원 규칙의 경우 2022년에 개정하였만 보완을 권고받아 감사관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규칙과 개정 규칙을 차례대로 비교하여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전반적인 규칙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원래의 규칙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원의 목적, 휴업일, 학습편제, 결원 보충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 입학과 수료 및 졸업 등의 규정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은 개정 날짜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기존의 부칙 내용을 본조항으로 모두 편입하였습니다. 교원 보수에 대한 사항은 인터넷에도 공개되어 있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 그대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연 번	현행	개정(안)
--------	----	-------

연 번	현행	개정(안)
1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에서의 유아(이하 ‘원아’라고 한다)에 대한 알맞은 교육환경의 제공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향하는 유아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2	제2조(명칭) 본원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이라 칭한다.	삭제
3	제3조(위치) 본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1에 위치한다.	제2조(위치) 본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1에 위치한다.
4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p> <p>제4조(교육연한) 본원은 교육연한을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교육연한, 학년도, 학기 및 휴업일</p> <p>제3조(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3년으로 하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p>
5	제5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	<p>제6조(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휴일</li> <li>2. 방학(여름, 겨울, 학년말)</li> <li>3. 개원기념일</li> <li>4. 자율휴업일: 본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li> </ol> <p>② 전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때에는 임시로 휴업할 수 있다.</p> <p>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p>	<p>제5조(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요일</li> <li>2. 법정공휴일</li> <li>3. 방학(여름, 겨울, 학년말)</li> <li>4. 개원기념일</li> <li>5. 자율휴업일</li> </ol> <p>② 제1항 제3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한다.</p> <p>③ 원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관할청’이라고 한다)에 보고한다.</p> <p>④ 본원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p>

연 번	현행	개정(안)
7	<p>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 정원</p> <p>제7조(학급편제) ① 본원의 학급편제는 단일 연령으로 10학급으로 한다.</p> <p>② 본원은 교육과정 유아 정원 내에서 방과후 과정을 혼합연령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p>	<p>우에는 수업 또는 행사나 실습 등을 할 수 있다.</p> <p>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 정원</p> <p>제6조(학급편제) ① 본원은 같은 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하며 학급수는 관할청의 인가에 따른다.</p> <p>② 본원은 교육과정 유아 정원 내에서 방과후 과정을 혼합연령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p>
8	<p>제8조(정원) 본원의 원아 정원은 360명으로 한다.</p>	<p>제7조(원아 정원) ① 본원의 원아 정원은 관할청에서 인가된 정원으로 한다.</p> <p>② 학기 중 원아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중에서 결원을 보충한다.</p> <p>③ 결원 보충은 재원 중인 형제나 쌍둥이 원아, 학급의 성비, 통학버스 운행 노선, 신청접수일순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p>
9	<p>제4장 교육 내용</p> <p>제9조(교육내용) ① 본원의 교육과정은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본원의 교육목표에 따라 운영한다.</p> <p>②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연령별 발달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 실행한다.</p>	<p>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p> <p>제8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우리나라의 교육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 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li> <li>2.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li> <li>3.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한다.</li> <li>4. 만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li> </ol>
10	<p>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p> <p>제10조(수업일수)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p> <p>② 천재지변의 발생이나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는 총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총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p>	<p>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p> <p>제9조(수업일수)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p> <p>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p>

연 번	현행	개정(안)
		<p>언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수업일수로 인정한다.</p> <p>③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 개인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p> <p>④ 개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2일 전까지 제출하고,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한다.</p>
11		제10조(교육과정 수업 시간) 교육과정 수업 시간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12		제11조(방과후과정 수업 시간) 방과후과정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며 교육과정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13	<p>제11조(수업운영방법) ① 본원은 매일 4시간씩 이상을 교육한다.</p> <p>② 교육과정은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다만, 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 교육내용, 유치원의 실정, 기후, 계절등을 고려하여 원장은 수업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방과후 과정은 기본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며, 교육과정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운영한다.</p>	<p>제12조(수업 운영 방법) ①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화학습을 강구하고 다양한 놀이 중심의 학습 방법을 적용한다.</p> <p>②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학급 간에 원아를 교류하거나 병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p> <p>③ 교사는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기기 교재 및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p>
14		제13조(수업연구) 교사는 다양한 수업이 되도록 부단한 연구를 통한 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 결재한 후 수업에 임하며, 본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수업을 공개한다.
15		<p>제14조(수업장학) ① 원장과 원감은 교사들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수업장학을 실시한다.</p> <p>② 원장과 원감은 원내 순서를 통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조언하고,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p>
16		<p>제15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본원은 원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원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 <p>② 본원은 학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한다.</p>
17		제15조의2(응급조치) 원아에게 질병,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연 번	현행	개정(안)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며,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 기관에 이송한다.
18		제15조의3(원아의 인권 보장) ① 본원의 교직원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한다. ② 교직원은 원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다.
19		제16조(원아 평가) ① 원아 평가는 원아의 발달 정도에 대해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에 역점을 둔다. ② 원아 평가는 학기 초에 평가의 영역, 평가의 방법, 평가도구의 제작, 평가의 시기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③ 평가 결과는 원아 상호 비교나 서열화를 지양하고, 원아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돕는 지도 및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20		제17조(생활기록부 작성·보관) 본원은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
21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8조(입학시기) 입학할 수 있는 시기는 연중으로 하며, 인가정원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22	제12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9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유아로 한다.
23	제13조(입학전형) ① 본원의 입학대상자는 당해 연도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 및 전형계획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 본원에 재학 중인 만3세 및 만4세 유아가 상위 연령의 학급에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추첨 없이 우선 수용할 수 있다.	제20조(입학전형) ① 본원의 입학대상자는 당해 연도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 및 전형계획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 본원은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원아를 선발한다. ③ 본원에 재학 중인 만 3세 및 만 4세 유아가



연 번	현행	개정(안)
24	<p>제14조(재입학·전입학, 출석정지 등) ① 학기 도중에 본원에 입학, 전입학, 재입학 하고자 하는 유아가 있을 경우,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및 전형 계획에 의하여 입학할 수 있다.</p> <p>② 학기 도중에 보호자의 희망에 의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p> <p>③ 원장은 유아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출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염성 질병의 감염으로 다른 유아에게 전염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li> <li>2. 기타의 사유로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li> </ol>	<p>상위 연령의 학급에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추첨 없이 우선 수용할 수 있다.</p> <p>제21조(재입학) 본원에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본원에 재학 당시 연령 또는 그 아래의 연령으로 다시 입학할 때 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를 유예하고자 하는 만 5세 원아가 1년을 더 재원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2조(편입학) 다른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본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제23조(전입학) 타 공·사립 유치원에서 전입을 희망할 경우 인가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p> <p>제24조(전학) 본원에서 타 공·사립 유치원으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p> <p>제25조(휴학) 질병, 사고, 기타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이 휴학원서를 받아 처리하며,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 희망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p> <p>제26조(퇴학)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원할 때 원장은 퇴학을 허가한다.</p> <p>제26조의 2(출석정지) ① 원아의 법정 감염성 질병이나 이에 준하는 질병 등으로 다른 원아에게 감염이 우려될 때 원장은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② 원아의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다른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원장은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p>
25	<p>제15조(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제4조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3분의 2이상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유아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료장 및 졸업장을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장은 만 3세, 만 4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li> </ol>	<p>제27조(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원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p> <p>②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p>

연 번	현행	개정(안)
	<p>아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p> <p>2. 원장은 만 5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아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p> <p>3. 다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수 정도에 관계 없이 수료증 및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수 기간을 당해 증서에 명기한다.</p> <p>② 수료증 및 졸업장의 양식은 원장이 정한다.</p>	<p>③ 원장은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 3·4세 유아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수 정도에 관계없이 수료증서나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수 기간을 당해 증서에 명기한다.</p> <p>④ 원장은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 5세 유아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p> <p>⑤ 수료증서 및 졸업증서의 양식은 원장이 정한다.</p>
26	<p>제7장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p> <p>제16조(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한다.</p>	<p>제7장 수업료·입학금 및 그 밖의 비용 징수</p> <p>제28조(입학금 및 수업료) ① 본원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징수한다.</p> <p>② 본원은 해당 연도에 정해진 일정 금액의 수업료를 정하여 징수한다.</p> <p>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울특별시 학교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p> <p>④ 입학금은 본원에 입학(전입학, 편입학 포함) 시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p>
27		<p>제29조(징수일) ① 수업료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② 재입학, 전입학, 편입학하는 원아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p> <p>③ 휴학 후 복학하는 원아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p>
28		<p>제30조(수업료의 반환) ① 수업료가 과오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li> <li>2.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의 보호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li> </ol>

연 번	현행	개정(안)
		3. 재원 중인 원아의 보호자가 퇴학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원아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9	제17조(미납 조치) 원장은 수업료를 미납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하거나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체납)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할 원아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이 해당 원아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거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30		제32조(교육활동비)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
31		제33조(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에 의한다.
32	제10장 교직원 제20조(교직원의 보수규정)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은 「교원지위법」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부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8장 교직원 제34조(교원의 배치) 본원은 원장, 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보직교사 배치 계획에 따른 보직교사를 둔다.
33		제35조(사무직원의 배치) 본원은 서울시교육청 정원 기준에 따라 사무직원을 배치한다.
34		제36조(교직원 연수) ① 원장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개선연구회, 학술연구회, 강연회 등의 각종 연수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게 하여 수업의 질 향상 및 수업 방법 개선에 노력한다. ② 원장은 교직원 연수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한다. ③ 교사는 교육과정 연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연수, 동호인 연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부칙 제4조(봉급 작성기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원과 직원을 구분한다. 1. 교직원의 지급형태는 연봉제와 시급제 등으로 구분한다. 2. 교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유치원 예산에 맞게 당사자와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37조(봉급과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① 본원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원장, 원감, 교원, 행정직원: 「공무원 보수규정」의 기본 호봉과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따르며 월급제로 한다. 2. 조리사, 차량기사, 미화담당직은 본원에서 책정하는 기본 봉급을 월급제로 한다.

연번	현행	개정(안)																																																																																																																																																									
	<p>3. 직원은 조리사, 행정업무, 회계업무, 청소업무, 방역업무 등등의 근로자를 말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한다.</p> <p>4. 교직원의 봉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구분</th> <th>직급</th> <th>봉급 지급 기준</th> <th>지급형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교원</td> <td>원장</td> <td>교육공무원 호봉</td> <td>연봉제</td> </tr> <tr> <td>2</td> <td>교원</td> <td>교사</td> <td>교육공무원 호봉</td> <td>연봉제</td> </tr> <tr> <td>3</td> <td>직원</td> <td>조리사</td> <td>국공립 보육 교직원 조리사 호봉</td> <td>연봉제</td> </tr> <tr> <td>4</td> <td>직원</td> <td>행정</td> <td>월 140시간 기준 기본급</td> <td>연봉제</td> </tr> <tr> <td>5</td> <td>직원</td> <td>방역/회계/청소</td> <td>최저임금 기준</td> <td>시급제</td> </tr> </tbody> </table> <p>제5조 (수당에 관한 기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수당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부가 급여(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지급 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교원 처우 개선비 수당</td> <td>공무원 보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교원에 한하여 교육청에서 지급</td> <td>교육청 교원 처우개선비 기준에 준함</td> <td>월</td> </tr> <tr> <td>초과근무수당</td> <td>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td> <td>- 1일 4시간(평일 1시간 초과근무 공제) - 1시간 미만은 제외 - 1개월 57시간 초과 불가 -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봉급기준액 26분의 1의 150% 참조하여 산출</td> <td>월</td> </tr> <tr> <td>연구수당</td> <td>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수당</td> <td>-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함</td> <td>월</td> </tr> <tr> <td>직급보</td> <td>직급을 수행하기 위한</td> <td>- 원장 400,000원 - 원감 250,000원 - 보직교사</td> <td>월</td> </tr> </tbody> </table>	연번	구분	직급	봉급 지급 기준	지급형태	1	교원	원장	교육공무원 호봉	연봉제	2	교원	교사	교육공무원 호봉	연봉제	3	직원	조리사	국공립 보육 교직원 조리사 호봉	연봉제	4	직원	행정	월 140시간 기준 기본급	연봉제	5	직원	방역/회계/청소	최저임금 기준	시급제	구분	내용	지급 기준	비고	교원 처우 개선비 수당	공무원 보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교원에 한하여 교육청에서 지급	교육청 교원 처우개선비 기준에 준함	월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1일 4시간(평일 1시간 초과근무 공제) - 1시간 미만은 제외 - 1개월 57시간 초과 불가 -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봉급기준액 26분의 1의 150% 참조하여 산출	월	연구수당	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함	월	직급보	직급을 수행하기 위한	- 원장 400,000원 - 원감 250,000원 - 보직교사	월	<p>② 본원 교직원의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 colspan="4">지급 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정근수당</td> <td rowspan="12">정근수당</td> <td>근무연수</td> <td>지급액</td> <td>근무연수</td> <td>지급액</td> <td rowspan="12">1월 7월</td> </tr> <tr> <td>1년 미만</td> <td>미지급</td> <td>7년 미만</td> <td>본봉의 30%</td> </tr> <tr> <td>2년 미만</td> <td>본봉의 5%</td> <td>8년 미만</td> <td>본봉의 35%</td> </tr> <tr> <td>3년 미만</td> <td>본봉의 10%</td> <td>9년 미만</td> <td>본봉의 40%</td> </tr> <tr> <td>4년 미만</td> <td>본봉의 15%</td> <td>10년 미만</td> <td>본봉의 45%</td> </tr> <tr> <td>5년 미만</td> <td>본봉의 20%</td> <td>10년 이상</td> <td>본봉의 50%</td> </tr> <tr> <td>6년 미만</td> <td>본봉의 25%</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 정근수당가산금</td> <td rowspan="5">매월</td> </tr> <tr> <td colspan="2">근무연수</td> <td colspan="2">지급액</td> </tr> <tr> <td colspan="2">20년 이상</td> <td colspan="2">100,000원</td> </tr> <tr> <td colspan="2">15년 이상~20년 미만</td> <td colspan="2">80,000원</td> </tr> <tr> <td colspan="2">10년 이상~15년 미만</td> <td colspan="2">60,000원</td> </tr> <tr> <td colspan="2">5년 이상~10년 미만</td> <td colspan="2">50,000원</td> </tr> <tr> <td colspan="2">5년 미만</td> <td colspan="2">없음</td> </tr> <tr> <td colspan="4">- 추가가산금</td> <td rowspan="2">매월</td> </tr> <tr> <td colspan="2">근무연수</td> <td colspan="2">지급액</td> </tr> <tr> <td colspan="2">25년 이상</td> <td colspan="2">30,000원</td> </tr> <tr> <td colspan="2">20년 이상~25년 미만</td> <td colspan="2">10,000원</td> </tr> <tr> <td>상여수당</td> <td>정근수당가산금</td> <td colspan="2"></td> <td rowspan="2">연 1회</td> </tr> <tr> <td>성과상여금</td> <td>사립학교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및 자체 지급 기준</td> <td colspan="2"></td> </tr> <tr> <td>가계보전수당</td> <td>육아휴</td> <td colspan="2">-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0,000원 - 첫째 자녀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월 110,000원</td> <td>매월</td> </tr> <tr> <td>육아휴</td> <td>육아휴</td> <td colspan="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지급 기준				비고	정근수당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월 7월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본봉의 30%	2년 미만	본봉의 5%	8년 미만	본봉의 35%	3년 미만	본봉의 10%	9년 미만	본봉의 40%	4년 미만	본봉의 15%	10년 미만	본봉의 45%	5년 미만	본봉의 20%	10년 이상	본봉의 50%	6년 미만	본봉의 25%			- 정근수당가산금				매월	근무연수		지급액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10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		없음		- 추가가산금				매월	근무연수		지급액		25년 이상		30,000원		20년 이상~25년 미만		10,000원		상여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연 1회	성과상여금	사립학교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및 자체 지급 기준			가계보전수당	육아휴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0,000원 - 첫째 자녀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월 110,000원		매월	육아휴	육아휴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연번	구분	직급	봉급 지급 기준	지급형태																																																																																																																																																							
1	교원	원장	교육공무원 호봉	연봉제																																																																																																																																																							
2	교원	교사	교육공무원 호봉	연봉제																																																																																																																																																							
3	직원	조리사	국공립 보육 교직원 조리사 호봉	연봉제																																																																																																																																																							
4	직원	행정	월 140시간 기준 기본급	연봉제																																																																																																																																																							
5	직원	방역/회계/청소	최저임금 기준	시급제																																																																																																																																																							
구분	내용	지급 기준	비고																																																																																																																																																								
교원 처우 개선비 수당	공무원 보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교원에 한하여 교육청에서 지급	교육청 교원 처우개선비 기준에 준함	월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1일 4시간(평일 1시간 초과근무 공제) - 1시간 미만은 제외 - 1개월 57시간 초과 불가 -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봉급기준액 26분의 1의 150% 참조하여 산출	월																																																																																																																																																								
연구수당	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함	월																																																																																																																																																								
직급보	직급을 수행하기 위한	- 원장 400,000원 - 원감 250,000원 - 보직교사	월																																																																																																																																																								
구분	내용	지급 기준				비고																																																																																																																																																					
정근수당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월 7월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본봉의 30%																																																																																																																																																						
		2년 미만	본봉의 5%	8년 미만	본봉의 35%																																																																																																																																																						
		3년 미만	본봉의 10%	9년 미만	본봉의 40%																																																																																																																																																						
		4년 미만	본봉의 15%	10년 미만	본봉의 45%																																																																																																																																																						
		5년 미만	본봉의 20%	10년 이상	본봉의 50%																																																																																																																																																						
		6년 미만	본봉의 25%																																																																																																																																																								
		- 정근수당가산금					매월																																																																																																																																																				
		근무연수		지급액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10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		없음																																																																																																																																																									
- 추가가산금				매월																																																																																																																																																							
근무연수		지급액																																																																																																																																																									
25년 이상		30,000원																																																																																																																																																									
20년 이상~25년 미만		10,000원																																																																																																																																																									
상여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연 1회																																																																																																																																																							
성과상여금	사립학교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및 자체 지급 기준																																																																																																																																																										
가계보전수당	육아휴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0,000원 - 첫째 자녀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월 110,000원		매월																																																																																																																																																							
육아휴	육아휴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연번	현행				개정(안)			
	구분	내용	지급 기준	비고	구분	내용	지급 기준	비고
	조비	수당	70,000원		특수근무수당	직수당		
	명절휴가비	추석, 날절 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담임교사 호봉액의 60%</li> <li>- 행정교사 호봉액의 60%</li> <li>- 부담임 교사, 조리사, 방역, 청소 등 기타 직원 정액제(계약에 따름) (15시간 미만자 제외)</li> </ul>	연 2회		보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70,000원</li> <li>- 원감 10,000원</li> </ul>	매월
						교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원감, 교사 250,000원</li> </ul>	매월
						교직수당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직교사 70,000원</li> <li>- 학급담당교원 130,000원</li> <li>- 영양교사 30,000원</li> <li>- 통학버스 월 10회 이상 동승 30,000원</li> <li>- 원로교사(55세 이상, 30년 이상 교육경력) 50,000원</li> </ul>	매월
관리업무수당	원장수행에 관한 수당 (공무원보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호봉액의 7.8%</li> </ul>	월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함</li> </ul>			
	정근수당	교원근무 연수별 월 봉급액의 5~3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정근 호봉액의 5%</li> <li>- 3년 정근 호봉액의 10%</li> <li>- 4년 정근 호봉액의 15%</li> <li>- 5년 정근 호봉액의 20%</li> <li>- 6년 정근 호봉액의 25%</li> <li>- 7년 이상 정근 호봉액의 30%</li> </ul>	1.7월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액분 월 10시간</li> <li>- 초과분 월 57시간(일 최대 4시간)</li> </ul>	
						관리업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월 호봉액의 7.8%</li> </ul>	매월
						휴일근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li> <li>- 봉급기준액 26분의 1의 150% 참조하여 산출</li> </ul>	
						실비변상등	정액급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0,000원(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li> </ul>
명절휴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원감, 교사 본봉의 60%</li> <li>- 행정직원 본봉의 60%</li> <li>- 부담임 교사, 조리사, 방역, 청소 등 기타 직원 정액제(계약에 따름, 15시간 미만자 제외)</li> </ul>	연 2회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400,000원</li> </ul>	매월	

연 번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data-bbox="826 555 1386 976"> <thead> <tr> <th data-bbox="826 555 879 613">구 분</th> <th data-bbox="879 555 932 613">내 용</th> <th data-bbox="932 555 1337 613">지급 기준</th> <th data-bbox="1337 555 1386 613">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26 613 879 725"></td> <td data-bbox="879 613 932 725">급 보 조 비</td> <td data-bbox="932 613 1337 725">- 원감 250,000원</td> <td data-bbox="1337 613 1386 725"></td> </tr> <tr> <td data-bbox="826 725 879 976">기 타</td> <td data-bbox="879 725 932 976">교 원 처 우 개 선 비 수 당</td> <td data-bbox="932 725 1337 976">교육청 교원 처우개선비 기준에 준함 (본봉에서 교원처우개선비 차감 지급)</td> <td data-bbox="1337 725 1386 976">매 월</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지급 기준	비 고		급 보 조 비	- 원감 250,000원		기 타	교 원 처 우 개 선 비 수 당	교육청 교원 처우개선비 기준에 준함 (본봉에서 교원처우개선비 차감 지급)	매 월
구 분	내 용	지급 기준	비 고											
	급 보 조 비	- 원감 250,000원												
기 타	교 원 처 우 개 선 비 수 당	교육청 교원 처우개선비 기준에 준함 (본봉에서 교원처우개선비 차감 지급)	매 월											
36	제21조(행동강령)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에 따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의 경영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은 별도로 붙임하여 시행한다.	제38조(청렴의무와 행동강령)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에 따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의 경영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은 본 규칙에 별도로 붙임하여 시행한다.												
37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유치원운영위원회</p> <p>제18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12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p> <p>③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유치원운영위원회</p> <p>제39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p> <p>③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p>												
38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교권보호위원회</p> <p>제40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교원의 지위 향</p>												

연 번	현행	개정(안)
		<p>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본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p> <p>②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따른다.</p>
39	<p>제9장 유치원 규칙의 개정 절차</p> <p>제19조(규칙개정) ① 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다.</p> <p>② 유치원규칙 중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 제6장의 사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학교법인 이사장이 개정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p> <p>③ 원장은 규칙 변경인가서를 접수한 경우 규칙을 확정·공포한다.</p>	<p>제11장 규칙의 개정 절차</p> <p>제41조(규칙 개정 절차) ① 규칙의 개정은 원장이 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p> <p>② 원장은 제3장의 학급편제 및 정원, 제7장의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기타 교육감이 정한 사항을 개정하려 할 때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다.</p> <p>③ 원장은 제2장의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장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5장의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6장, 제10장의 규칙의 개정 절차를 개정하였을 때는 개정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p>
40	<p>부칙</p> <p>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규칙) 규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정한다.</p> <p>제3조(개정일) 2022년 10월 26일부터 개정된 규칙을 시행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규칙) 규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정한다.</p> <p>제3조 본 규칙을 2022. 10. 26.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p> <p>제4조 본 규칙을 2023. 6. 19. 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p>
<p>&lt;위원장&gt;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lt;위원장&gt; 없으시면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p>		

## 안건 8. 2024학년도 방과후과정반 미운영 및 통학버스 노선 일부 조정

<위원장>

다음으로 여덟 번째 2024학년도 방과후과정반 미운영 및 통학버스 노선 일부 조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원장>

가. 목적: 교육과정운영반 내실화와 유치원 운영상의 필요, 통학버스 노선의 변경 수요 반영

나. 현재 운영 현황

- 1) 방과후과정반: 전체 146명 중 방과후 재편성 20명 운영(만5세 14명, 만4세 7명, 만3세 1명)
- 2) 통학버스

차수	버스	지역	등원	하원	비고
1차반	토끼	신수동, 용강동, 구수동, 창전동, 상수동, 합정동	23명	18명	
	나비		19명	18명	
2차반	토끼		31명	31명	
	나비	남·북가좌동 가재울 3·4구역, 중동	10명	10명	노선 중단 예정

다. 실시 시기: 2024학년도부터 적용

라. 고려 사항

- 1) 여름방학일에 맞추어 전체 학부모에게 24학년도부터 방과후과정반 미운영 및 2차반 나비버스 운행 노선 중단 관련 사전 안내
- 2) 신규 노선은 학부모 수요와 운행 시간 등 고려하여 검토 후 확정

<위원장>

2024학년도부터 우리 유치원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방과후과정(종일반)을 운영하지 않고, 승차 인원이 매우 적은 2차반 나비버스 노선의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유치원의 운영상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요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146명 원생 중 방과후 재편성으로 20명 1학급으로 오후 5시까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유치원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 해결해야만 할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가을에 신축 유치원으로 이사하면 유치원 내부 면적이 지금보다 두 배로 커져 바닥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비용, 조리실 인덕션기구와 냉난방 등 전기요금, 승강기, 소방, 전기 등 각종 비용이 지금보다 대폭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위탁급식이었던 급식 운영이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영양교사도 채용해야 하여 인건비 부담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하시는 부모님을 위하여 한 반이라도 어떻게든 꾸려나가 보려고 했지만, 유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당장 종일반을 다니지 못하는 8명의 가정과, 또 지금은 종일반이 아니지만 신청하려고 대기중인 가정에도



적잖은 혼란과 걱정을 안겨드릴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치원은 방과후종일반을 여러 학급으로 운영하고 어떤 유치원은 원생 전원을 방과후종일반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수요가 많더라도 그에 부응하여 교사를 더 채용하고 교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5시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5시에 하원 하는 원생의 수는 매우 적고, 중간에 제각각 하원 하는 원생이 더 많아 종일반 운영의 실질적 의미도 적은 편입니다. 적은 인원에 비해 운영 부담은 크며, 교육비 통계에 포함되어 실질 운영비 수입은 감소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즈음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오랜 기간 숙의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과 보육, 중요한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리면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나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 합니다.

통학버스의 경우도 2차반 나비버스는 10명도 안 타는 경우가 많아 큰 버스에 탑승 인원이 적다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은 신규노선을 검토하여 많은 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부모님들께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

셔틀을 타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추후에 노선이 없어지는 곳에서 유아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 교원위원>

사실 노선을 없애려고 하는 곳에는 최근에도 대형유치원이 생길 정도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마포 안쪽지역은 문의가 너무 많고 학원도 없고 하는 문의가 많이 있어서 3년 전 정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상해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리 안내하고 공고를 크게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교원위원>

우리 유치원에서는 세 번 정도의 노선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학 중 전화드려 안내드렸습니다. 아마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하여 전달할 것 같습니다.

<김\*\* 위원>

빨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김\*\* 위원>

무지개반이 없다면 남은 교실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원장>

내년도 3세 반을 늘릴지 검토 중입니다.

- 기타 안건 협의 -

<위원장>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 협의가 있겠습니다.

<간사>

1학기에 진행된 각 연령별 체험학습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

<위원장>

이상 안건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응답은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위원 일동>

재청합니다.

<위원장>

금일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7. 폐회

<위원장>

이상으로 제45회 흥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